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5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이정문・박홍배・이연희

김남근 • 한민수 • 조승래

박 정・김원이・이인영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 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월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

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제대군인 주간)"을 "(제대군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월의 둘째 주를"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제대군인의 날부터 1주일을"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50의 범위에서"를 "5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	제3조의2(제대군인의 날) ①		
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	<u>10월 7일을</u>		
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제		
다.	대군인의 날부터 1주일을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②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			
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			
한 금액의 100분의 <u>50의 범위</u>	<u>5</u> 0에 해당		
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	하는 금액을		
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			
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